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2577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고1. C

2. D

변론 종결2023. 6. 14.

판결 선고2023. 7.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0분의 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E 사이의 2019. 8. 12.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E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접수 제239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0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E 사이의 2019. 8. 12.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E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접수 제239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E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E이 그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던 중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G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차전2010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은 2020. 9.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G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2022. 2.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022. 7. 27. 현재 E의 잔존 양수금 채권은 원금 21,420,671원, 연체이자 등 52,035,287원, 합계 73,455,958원이다(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9.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I(소취하), 자녀 피고들 및 E이 있다. 피고들 및 I, E은 2019. 8. 12.경1) 이 사건 부동산을 I, 피고 C이 각 30%, 피고 D이 40% 지분을 공유하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접수 제239707호로 2019.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 피고 C에 대하여 각 10분의 3, 피고 D에 대하여 지분 10분의 4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F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D: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피고 D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F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E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지분 또는 그 일부(피고 C은 7/90, 피고 D은 13/90)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각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하여 각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위 지분에 관하여 E에게 그 소유권인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각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항여진

별지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계약일자는 2019. 12. 18.이나(갑 제5호증),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의 자백간주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특정한 일자를 이 사건 계약일로 본다.